

의안 번호	1481	【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0. 5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0. 10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0. 23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전도시국장 장길원)

가. 제정이유

-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
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
규정 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가입대상(안 제3조)
-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(안 제4조)
- 보험금액 산정(안 제7조)
- 보험금 청구 및 지급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
다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
-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과 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각종 재난(자연, 사회)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명·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